

# 닭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이 회 태 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자관리과

##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추진경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확대하면서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 김치도 단계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2008년 7월 8일부터는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하는 모든 음식점과 100m<sup>2</sup> 이상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쌀(밥류)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으며, 2008년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 닭고기 식육을 사용하는 음식점과 100m<sup>2</sup> 이상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배추 김치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농관원에 특사경을 400

명에서 1,100명으로 대폭 확대('08.6)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무총리실, 국방부, 교과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검찰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음식점 원산지 중앙협의회를 두어 업무를 조정해 가면서 농관원, 식약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 · 보급 및 교육실시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2만5천여명의 명예감시원과 1천4백명의 음식점 자율감시원을 활용하여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계도를 실시해왔다.

한편, 돼지고기 · 닭고기의 경우 2008년 12월 22일부터 본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규모 음식점(33m<sup>2</sup>~100m<sup>2</sup>)은 2009년 3월 21일까지, 소규모 음식점(33m<sup>2</sup> 미만)은 6월 21일까지 미표시에 대하여는 계도기간을 설정 · 운영했다.

## 2. 닭고기 원산지 표시제 주요 내용

### 가. 시행시기 및 대상 업소

- 시행시기 : 2008. 12. 22
- 대상업소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표 1〉 닭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 유형별 음식의 종류(예시)

유형	유형별 음식의 종류(예시)
구이용	통구이류, 불고기류, 양념구이류(닭갈비, 닭꼬치, 닭발, 닭날개, 닭가슴, 닭모래집 등), 버거류, 스테이크류(안심스테이크, 닭가슴스테이크 등), 볶음류(닭볶음, 닭발, 모래집볶음, 야채볶음 등), 로스구이류, 바비큐류
탕용	탕류(삼계탕, 곰탕, 초계탕, 매운탕 등), 백숙류, 닭개장류
찜용	찜닭류, 달걀비찜류
튀김용	후라이드치킨류, 양념치킨류, 튀김류, 치킨돈까스류, 라조기류, 깐풍기류

## 나. 표시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고, 그 밖에 풋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100m<sup>2</sup> 미만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 또는 풋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 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인터넷, 취사장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풋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국내산 : 닭볶음탕(닭고기 국내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 ◇ 수입산 : 삼계탕(닭고기 중국산)
  - ◇ 국내산과 수입산 섞음 : 닭갈비(국내산과 브라질산 섞음)

※ 원산지가 동일할 경우 일괄표시도 가능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닭고기”만 사용합니다.」

## 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 1백만원
- ※ 또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 라. 닭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 유형별 음식의 종류(예시)

〈표 1〉 참조

## 3.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실적

닭고기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된 2008년 12월 22일 이전까지는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왔다. 2008년까지 유통단계에서의 닭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은 연간 30건 내외였으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의 경우 10월 말까지 닭고기는 총 96건(허위표시 46건, 미

〈표 2〉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실적

구분	점검업체수	품목	적발실적(개소)		
			계	허위표시	미표시
2008년 (7월 8일 이후)	111,738	쇠고기	524	409	115
		쌀	115	8	107
		돼지고기	2	2	-
		닭고기	-	-	-
		배추김치	2	2	-
		계	643	421	222
2009년 (1~10월말)	137,950	쇠고기	705	576	129
		쌀	34	11	23
		돼지고기	1,014	812	202
		닭고기	75	41	34
		배추김치	125	83	42
		계	1,953	1,523	430

※ 유통단계 닭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 : (2007) 31 → (2008) 32 → (2009.10) 21건     ※출처 : 농관원

표시 50)이 적발되었다. 이 중 음식점 위반건 수는 75건(허위표시 41, 미표시 34)이다.

#### 〈닭고기 원산지 위반유형〉

- 치킨판매업소의 경우 오후 늦게부터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음식점 원산지 단속의 사각지대임. 양념통닭집 업소 내부에 원산지를 국내산 닭고기로 일괄 표시되어 있었으나 거래 내역서를 확인한 바 브라질산 냉동 순살로만을 구입하여 살로만 치킨과 닭강정으로 조리하여 원산지를 국내산 닭고기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 수입산 닭을 원료로 발골 및 양념 등의 처리를 하여 생산한 닭 가공품(바비큐불갈비 등)은 육안 식별이 어려워 원산지 위반할 가능성이 많음. 가공제조업체 생산품인 바비큐불갈비, 매콤주물럭, 순살양념갈비 등을 미국산 및 브라질산 닭 넓적다리로 생

산한 상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 하여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및 ○○닭갈비 등에 판매

- 냉동 수입 닭고기를 해동해 국내산과 구별하기 힘들게 절단한 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 음식점에서 수입산 닭 날개를 국내산과 50 : 50비율로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 제조 가공업체에서 중국산 닭고기가 혼합된 닭꼬지를 생산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 4. 성과와 과제

닭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당초 도입초기 우려와

는 달리 무난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법적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오리고기, 고춧가루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 등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09년말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농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고 할 정도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는데도 기여했다(농산물구매시 고려사항 : 원산지 39.2%, 안전성 34.9, 가격 10.1, 맛 8.4, 브랜드 1.5 등).

이는 정부의 단속과 병행한 홍보활동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 그리고 음식점 업주들의 자발적인 협조 등 3박자가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평가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이론 감이 없지 않지만 국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 차별화와 가격차별화가 뚜렷해지는 등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경우 가격차이가 발생되거나 수입산의 판매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축산물간에도 지역·품질에 따라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좀더 보완 발전시켜야 할 여러 가

지 과제도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처벌이 미약함에 따른 재벌발생 문제와 인터넷 판매에 대한 표시근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 9일부터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업소명·주소·위반품목·위반내역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인터넷쇼핑몰·홈쇼핑 등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속기관도 농관원뿐만 아니라 식약청, 지자체 등에서 단속하고 있어 법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여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법사위) 중에 있으며, 금명간 법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확대 등 원산지 표시대상을 지속적 늘려나가면서 단속 공무원의 단속능력 배양과 장비의 현대화 등을 통해 단속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므로 생산자·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늘려나가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전화 1588-8112)가 필요한 실정이다. 